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(시정지시서) 공시송달 공고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7. 16.

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



1. 건명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
2. 근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법인등록번호	주소	대표	퇴직공제부금 미납액	공시송달 내용
(주)세기토건 (송정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)	206111-0*****	경기도 용인시 기흥로 58, 25층 2502호	황**	2025.11월분 공제부금 23,068,500원	2026.7.29.까지 송정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2025.11월분 공제부금 23,068,500원 납부 지시

4. 공고기간: 2026. 7. 16. ~ 2026. 7. 29.
5. 기타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2과 근로감독관 김선빈(062-975-644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